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의안 번호	820
----------	-----

제출연월일 : 1999.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 안 이 유

-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함(안제2조)
- 나. 기금의 재원은 안산시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함(안제3조)
- 다.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항등 기타 안산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등으로 규정함.(안제4조)
- 라. 기금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계공무원 기금결산등을 규정함(안제5조 내지 제12조)
- 마. 기금을 지원받은자가 지원목적의 사용 또는 기타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안제13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련법령 발췌서 : 별첨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99. 9. 13 ~ 10. 2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 별첨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사항, 성차별소송금 지원
6. 기타 안산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여성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발생으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